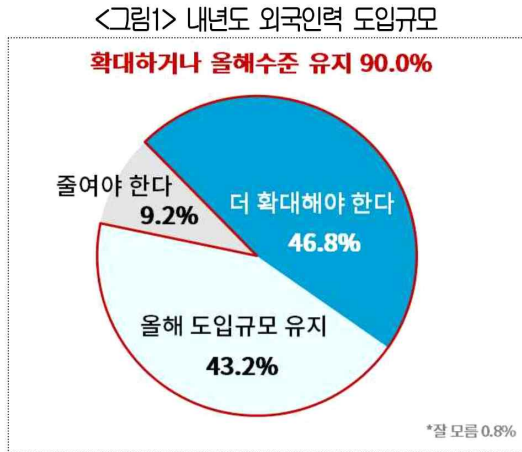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9곳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올해 수준 이상돼야”

-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외국인 고용기업 57%, 외국인근로자 부족 호소
- 외국인근로자 뽑아놓고도 문제... 근로계약해지 요구 경험 52.4%, 거부시 태업 및 무단결근 등 행태
- 18일 정부에 ‘도입인력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횡수제한’ 등 13개 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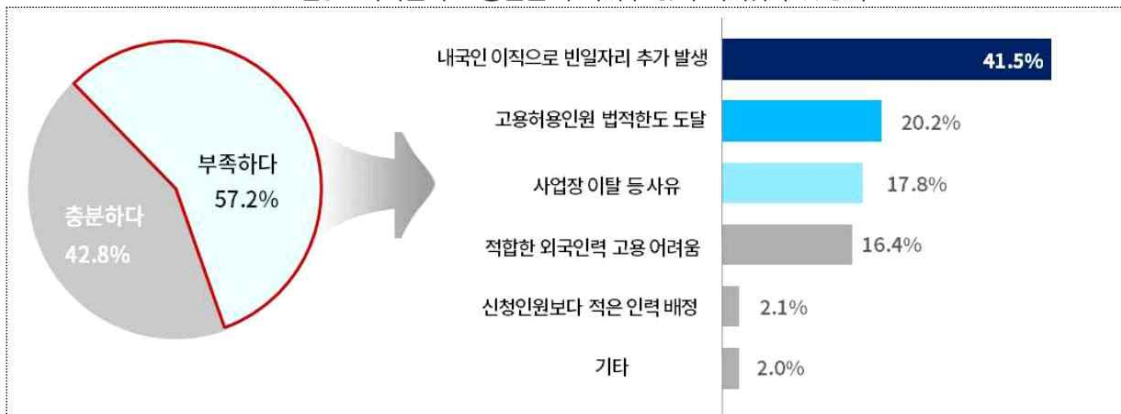
전국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총 6일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총 502개사로 이 중 90%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잘 모름 0.8%>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업계 현장에서는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은 올해와 같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력을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자리 추가 발생’(41.5%)을 손꼽은 가운데,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 도달’(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따랐다. <신청인원보다 적은 인력 배정 2.1%, 기타 2.0%>

<그림3> 외국인력 고용인원 부족여부 & 부족이유 (복수응답)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며, 이는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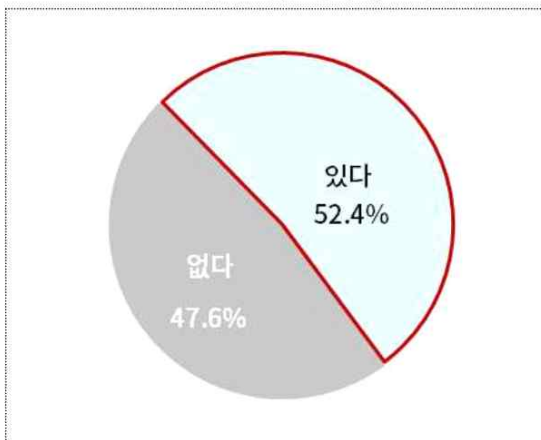
한편, 1년차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를 100으로 보고 동일연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86.7%, 소요 인건비는 평균 91.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 뽑아놓고도 문제... 근로계약해지 요구 경험 52.4%, 거부시 태업 및 무단결근 등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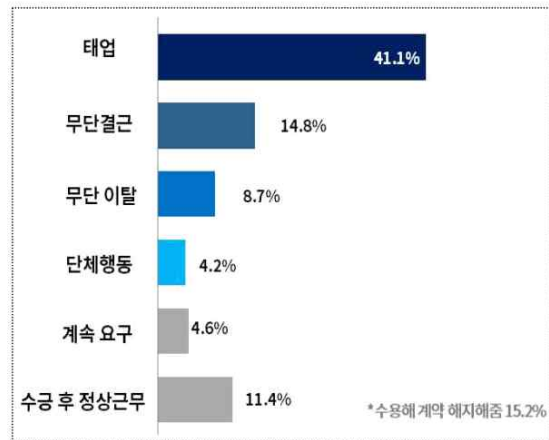
모자라는 일손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뽑아쓰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현장에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회사측과 원만히 타협하고 정상근무에 나선 경우는 11.4%에 불과했다. <노동청 진정 등 계속 요구 4.6%, 수용해 계약 해지해줌 15.2%>

<그림4> 사업장 변경(고용해지) 요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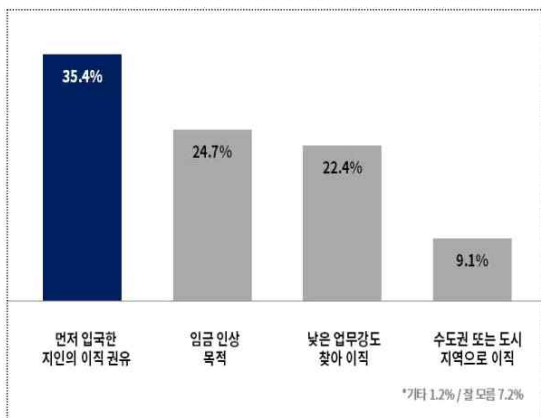


<그림5> 사업장 변경 거부시 외국인근로자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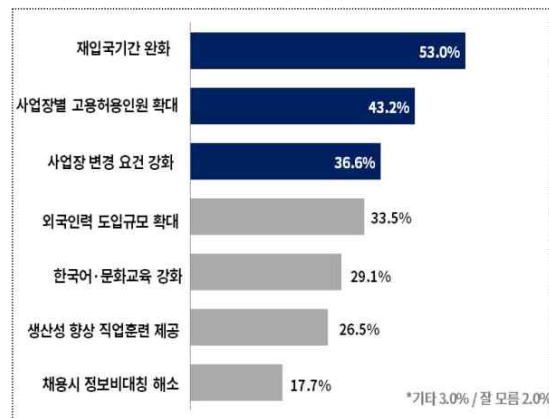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또는 도시지역으로 이직한 경우는 9.1%에 그쳤다. <잘 모름 7.2% , 기타 1.2%>

<그림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이유



<그림7> 기업 바라는 외국인력제도 개선사항(복수응답)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5일 수도권 등으로의 외국인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업종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제도를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실시해 오는 9월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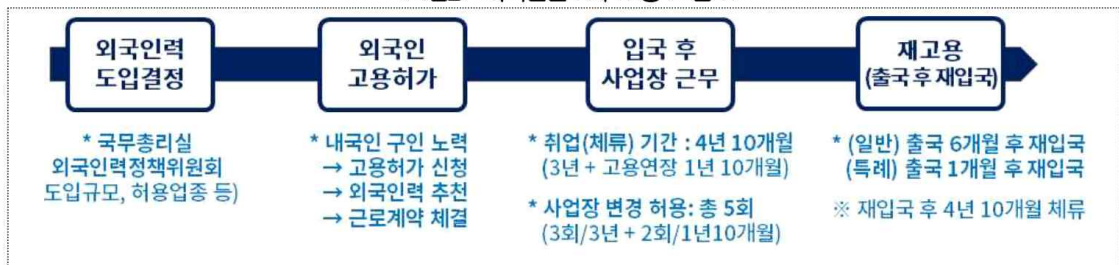
상공회의소, 18일 정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도입인력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등 13개 제도 개선 건의

상공회의소는 금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의 순이었다.

건의서에는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 관련해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분류업무, 플랜트공사),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을 담고 있다.

〈그림〉 외국인근로자 고용 흐름도



전문외국인력인 숙련기능인력(E-7비자) 관련한 건의도 있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도입한 용접공·도장공의 낮은 기량과 자격이 문제되고 있다며 자격기량 검증체계를 현지에 구축해 줄 것과 최근 해외수주가 늘면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산업에 대해서도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외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채용연계, 공적개발원조(ODA) 직업훈련 사업 참여자 도입, 출입국관리소 인력충원 및 증설 등을 건의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 하는데 외국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구감소와 도심 인구집중화로 인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규모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13대 종합건의」

분류	건의 주요내용	
비전문 외국인력 (E-9)	①도입규모 및 고용허용인원 확대 -(현행) '23년 11만명 도입 -(개선) '23년 수준 유지 또 확대	②취업(체류)기간 연장 -(현행) 4년 10개월 취업 후 출국 재고용시 6개월 또는 1개월 후 재입국 허용 -(개선) 재고용시 출국 없는 체류연장
	③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현행) 5회 변경 허용 -(개선) 2회 변경 허용	④플랜트공사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현행) 건설공사 외국인력 고용허용 단 플랜트공사는 고용금지 -(개선) 플랜트공사도 외국인력 고용허용
	⑤물류업 고용허가 확대 -(현행) 물류터미널 한해 고용허용 -(개선) 택배분류업무, 일반물류센터 고용허용	⑥의사소통문화 차이 해소 지원 -(현행) 국적 고려 않고 외국인력 배정 -(개선) 동일 국적으로 외국인력 배정
	⑦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 -(현행) 관련 지원 없음 -(개선) 외국인근로자 수용지구 신설 및 기숙사 지원	⑧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현행)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인원 따른 배점 부과 -(개선)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인원 배점항목에서 삭제
전문외국인력 (E-7)	⑨항공제조산업 도입 허용 -(현행) 전문외국인력 고용불가 -(개선) 항공제조산업 고용허용 신설	⑩조선업 숙련공 고용 자격검증 시스템 마련 -(현행) 자격증 및 간단한 테스트만 진행 -(개선) 현지에서 자격기능 검증체계 마련
유학생 활용 &직업훈련	⑪외국인유학생 대상 지역기업 채용연계 -(현행) 정부, 관련 특례제도 마련 중 -(개선) 외국인유학생 졸업 후 지역기업 취업 허용	⑫ODA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국내 도입 -(현행) 관련 제도 없음 -(개선) 직업훈련 참여 후 평가수료자 국내기업 채용 연계제도 마련
출입국관리소	⑬출입국관리소 인력충원 및 증설 - 취업행비자 체류서비스 분리 전담 센터 신설 또는 관련 인원 충원	